## 재해영향평가법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8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종양・김미애・서일준

김성원 · 김희정 · 이종욱

조승환 · 김태호 · 이달희

조은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기 전에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전반을 다루는 「자연재해대책법」에 11개 조항으로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으로 불투수 층 및 인공사면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 등에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준공 후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법률의 부재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재해영향평가서의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의 고도화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과정에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안 제4조).
- 나. 행정안정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 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 라. 행정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영향 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정 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 받았을 때에

- 그 내용을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1조)
- 아.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 현장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에 재해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영향저감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안 제31조).
- 차.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사 등 기술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타.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및 재해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 재해영향평가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측·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2. "재해영향"이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홍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사면의 불안정 등 재해를 유발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와 주변지역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 3.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행정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및 재해영향 발생 감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재해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5. "재해영향평가"란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및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 6. "재해영향저감대책"이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제거하거 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책을 말한다.
- 7. "사업시행자"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 8. "재해영향평가대행자"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9. "재해영향평가사"란 재해 현황 조사, 재해영향 예측·분석, 재해 영향 제거 또는 감소 대책 및 대안의 평가 등을 통하여 재해영향 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10. "재해영향평가대상지역"이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재해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재해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객관성, 과학성,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의 평가지침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등을 마련·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본원칙)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2.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과학적·논리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 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 야 한다.
  - 3.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 과정에 관계기관,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재해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5.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등이 특정 지역 및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누적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제5조(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①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 ②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재해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 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유형별 재 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해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재해영향평가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재해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재해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사항
  - 2.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재해영향 평가 분야 및 방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설립·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의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1절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및 의견수렴

- 제9조(재해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3. 에너지 개발
- 4. 교통시설의 건설
-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9. 그 밖에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 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 한 사업
- 3. 그 밖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

주민 등에게 개발사업등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대상 지와 연관되는 유역 내 하천의 범람, 내수 침수, 토석류 등의 과거 피해이력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이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이하 "방재시설"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이전에 해당 방재시설의 사용·소유·점유·관리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재해영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 및 권리자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주민 및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제2절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11조(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서 및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재해영향평 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에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등의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의 요청 시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재해 영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따라 사전검토를 받은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허가등을 받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 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받은 개발 사업 재해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 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하여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재해영향평가의 제거·감소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개발사

업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개발사업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해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 성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등의 계획이 미흡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재해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개발사업등의 추진으로 재해영향이 현저하게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을 재검토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등의 재

검토 및 제6항에 따른 조정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협의 내용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 13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재해영향평가서 및 개발사업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려면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이 재해영향평가서 및 개발사업등 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재해영향 평가서 및 개발사업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제 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등의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재해영향저감대책의 변경에 대한 이 행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를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 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등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허가등이 실효되어 해당 개발사업등의 확정 또는 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개발사업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종전에 완료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 1. 해당 개발사업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해당 개발사업등에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 3. 제1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②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21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 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 2. 해당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3. 재해영향저감대책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 제22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등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제20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보받고 개발사업등을 시행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사업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교육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이행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 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
- 제25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22조부터 제24 조까지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재해영 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 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
- 제27조(협의 이행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착공 통보를 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이하 "점검대상 사업장"이라 한다) 에 대해 제30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점검대상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행실태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1.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점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제28조(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 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개발사업이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 및 공사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0조(협의 이행 결과의 제출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준공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 제31조(사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에 재해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이하 "재해영향저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영향저감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이행상황 등에 관한보고서(이하 "사후관리보고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의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사후관리보고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재해영향평가의 업무 대행 등) ①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해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해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이하 "재해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를 비롯한 기술인력과 시

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재해영 향평가 업무 대행 등록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 또는 재해영향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다른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재해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재해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3. 재해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재해영향평가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재해영향평가대행자와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등 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 5. 재해영향평가대행자와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재해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

- 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 하지 아니할 것
- ④ 재해영향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재해영향평가의 대행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34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재해영향평가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35조(재해영향평가대행자 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 2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제32조제3 항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및 재해영향평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재해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3. 영업정지기간 중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등록 후 2년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해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7.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8.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34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 10. 재해영향평가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자연재해대책법」의 준용) 재해영향평가등의 업무의 대행 및 재해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재관리대책 업무"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로 보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재해영향평가 대행자"로 본다.

#### 제3장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 제38조(재해영향평가사) ① 재해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사가 될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40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재해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재해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이 응시일로부터 3년간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⑧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재해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재해영향평가사는 재해영향평 가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재해영향평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이름으로 재해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재해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 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 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 실하게 작성한 경우
  - 4.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재해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 제41조(재해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 ·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비밀 유지의 의무) 재해영향평가대행자, 재해영향평가사, 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재해영 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이하 "운영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1.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 3. 재해영향평가대행자가 보유한 재해영향평가사 등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정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운영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재해영향평가협회) ①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및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조사·교육·홍 보와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벌칙 등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방해하 거나 기피한 자
-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재해영향평 가 업무를 대행한 자
-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재해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자
- 7.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 자
  -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5. 제24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준공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7조제1항·제2항제1호, 제79조제1항을 삭제한 다.

제8조제1항 중 "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4조, 제8조"를 "제8조"로 한다.